

【논문】

전시 만주국 체력 동원과 健民의 창출

전경선*

| 차

례 |

- I. 머리말
- II. 전시 국책과 민중의 '체력'
- III. 식민권력의 대민 체력의 관리와 통제
 1. 國民體力證檢定制도의 실시
 2. 國民體力法の 제정
- IV. 맺음말

국문초록

전시 만주국 식민권력은 전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건강한 인적 자원, 즉 건민의 창출을 목적으로 민중의 건강과 체력을 적극 관리하고 통제하였다. 그 주요 방식은 신체 검사와 체력(장) 검사였고 대상은 전시 주요 국책 수행자인 학생, 청소년이었다.

만주국 정부는 <全國學生身體檢査要項>(1936)을 제정, 시행하여 매년 학생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매년 9월 일주일 간 개최되는 체육주간을 이용해서 청소년체력검사를 시행하였다. 본 체력검사에서는 만주국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의 표준 체력을 제시하고 도달한 남녀 청소년에게 '체력우수증'을 수여하였다. 이후 체력검사는 국민체력증검정 제도(1941)가 시행되면서 한층 강화되었다. 중앙 정부기관인 민생부(대신) 주관 하에 실시되는 본 체력검사는 15세에서 25세까지의 만주국 남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검정 종목이 이전 3종에서 5종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제시된 표준 역시 각 종목마다 상, 중, 하로 세분되었고 급의도 3단계로 설정되었다. 상, 중, 하급 합격자에게는 '체력증'과 '체력장(배지)'을 수여함으로써 신체 단련과 체력 검사에 참가를 적극 유도하였다.

태평양전쟁 전후 시기 전시 동원체제가 한층 강화되자 만주국 식민권력은 청소년,

* 신라대 역사교육과 조교수(교육전담)

학생의 신체, 체력 증강에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시도했고 그 결과 1942년 ‘국민체력 법’이 제정되었다. 본 법의 제정으로 만주국 17~19세 남자의 체력검사가 의무화되었다. 체력검사의 내용에는 기존 신체검사에다 질병검사가 추가되었다. 뿐만 아니라 검사 결과에 따라, 신체허약자나 결핵 등의 질환자에 대해서는 체력 혹은 신체 상태의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가 취해졌다. 피검사인은 체력검사 후 발급되는 체력수첩을 26세 까지 보존하면서 필요할 경우 그것을 제시해야 했다.

전시 만주국 식민권력의 대민 체력 동원 혹은 관리는 시국이 엄중해짐에 따라 표준 체력을 가진 자에게 ‘체력우수증’ 등을 수여하여 체력 증강을 장려하는 방식에서 점차 표준 체력 미달자에게 ‘지도’나 ‘요양’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여 개선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갔다.

| 주제어 : 만주국, 체력증강, 국민체력증검정제도, 국민체력법

I. 머리말

전시체제 하 근대 국가에서 성공적인 전쟁 수행을 위한 건강한 인적 자원의 배양과 확보는 지상과제였다. 따라서 국가권력은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건강에 적극 개입하여 그들이 전쟁에 기여할 수 있는 혹은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신체, 즉 ‘건강한 몸’을 가지도록 갖가지 신체 조형술¹을 구사한 것은 널리 알려진 바이다.

근대 동아시아에서 파시즘체제를 구축하면서 본격적인 침략전쟁에 착수했던 일본의 경우, 전시 일본인의 체력 증강을 위해 위생행정의 전문기관인 후생성(厚生省)을 설치했고(1938), 후생성 산하 체력국(體力局)에서는 15~25세 남성을 대상으로 한 체력검증을 시행하였다(1939년~). 뿐만 아니라 국민체력법(國民體力法, 1940), 나아가 국민우생법(國民優生法, 1940)이 제정·공포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전시 일본에서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건강까지도 관리, 동원하는 체제가 완성되어 갔다.² 이러한 일본 파시즘 체제 하

1 김예림은 국가권력 혹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개개인의 신체가 개조되는 방식을 ‘신체조형술’이라는 용어로 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김예림, 2005, 「전시기 오락정책과 문화로서의 우생학」, 『역사비평』2005년 겨울호).

2 藤野 豊, 2003, 『厚生省の誕生—医療はファッションをいかに推進したか』, かかもがわ出版,

의 이른바 '생명·건강의 국가관리체제'는 식민지 조선뿐만 아니라 만주(국)으로도 이식되었다.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 일본과 日滿一體의 관계에 있던 만주국은 전시체제 확립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더욱이 1938년 이후 중일전쟁이 장기화되는 양상을 띠는 가운데 만주국에서는 일본의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하기 위한 국책 수행에 만주국인(滿洲國人)들을 동원하기 위한 일련의 법령들이 제정, 공포되었다. 특히 청년·장정들의 병역 의무를 강제하는 징병제인 국병법(1940), 학생·청장년층을 노동력으로 징발하는 국민근로봉공법(1942) 등의 시행에 있어 그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은 만주국인들의 '건강한 몸'이었다. 이에 따라 식민권력은 만주국인들이 전선의 군인, 산업전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신체를 통제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관련 캠페인(체육주간, 건강주간, 건민운동 등)을 적극 전개하였다. 만주국에서도 식민권력에 의한 신체 통제는 '금지'와 '퇴치', '장려'와 '조성'이라는 양가적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식민지 통치, 식민지 지배에 있어 전시 인적 자원의 동원 실태를 온전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식민권력이 식민지 민중들의 신체를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했는가를 해명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식민권력은 식민지의 인적 자원 혹은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확보, 동원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정비하거나 확충하고 아울러 관련 법령을 제정해 나갔다. 이러한 식민권력 주도의 노무동원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나아가 목표로 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동원의 대상인 민중의 '신체'(몸)의 관리와 통제가 전제되어야 했다.

이와 관련하여 전시 일본이나 식민지 조선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당히 축적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전시 일본을 대상으로 해서는 후생성의 설치와 이에 따른 국민의 체력관리(국민체력법, 국민우생법), 건민운동, 우생정책

등 관련 연구가 최근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³ 만주국의 경우 제국 일본의 식민지와 다름없는 그 일부로서, 특히 전시 동원을 목적으로 한 제도나 법률 등이 시차를 두고 본국 일본과 동일하게 제정, 시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보건(정책) 관련 부문 역시도 예외는 아니다. 그럼에도 만주국을 대상으로 한 관련 연구는 쉽게 찾아보기가 어렵다.

다만, 沈潔의 연구에서 관련 내용이 부분적으로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⁴ 또한 전시 국가권력(식민권력)의 신체 관리 혹은 통제와 관련지을 수 있는 연구는 후생운동(厚生運動) 부문이다. 일본에서는 193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고 특히 日本厚生協會(1938년 발족)가 운동을 주도하였다. 만주국에서는 흥아 후생대회(興亞厚生大會, 大坂市, 1940)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후생운동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1941년 만주국 관변 민중동원단체인 협화회(協和會) 주도로 운동이 추진되었다. 후생운동을 주도한 협화회 자체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진전되어 있으나, 협화회의 후생운동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 후생운동만을 전문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흔하지 않다.⁵

본 논문에서는 현재까지 연구가 미진한 상태인 전시 만주국의 대민 신체관리 혹은 통제의 양상을 '건민의 창출'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파악하고자 한다. 전시 건강한 인적 자원의 확보는 민중의 건강과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했다. 이하에서는 만주국 정부의 대민 체력 동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체력증경제도, 국민체력법을 중심으로 식민권력의 대민 체력 관리 혹은 통제의 양상을 설명해내고자 한다.

3 藤野 豊, 앞의 책; 藤野 豊, 2000, 『強制された健康—日本ファシズム下の生命と身体』, 吉川弘文館; 寒川恒夫 編著, 2017, 『近代日本を創った身體』, 大修館書店; 權學俊, 2018, 『近代日本における身體の國民化と規律化』, 『立明館産業社會論集』第53卷 第4號 등.

4 沈潔, 1996, 『「滿洲國」社會事業史』, ミネルヴァ書房, 251~269쪽.

5 만주국 후생운동 관련 연구로는 都筑眞, 2019, 『滿洲國における厚生運動の方針に関する研究』, 『日本女子体育大学紀要』49 등이 있다.

II. 전시 국책과 민중의 ‘체력’

일본의 침략전쟁인 중일전쟁이 장기화되고 태평양전쟁으로 확대되면서 물적, 인적 자원의 징발과 동원을 강제하는 전시동원체제는 만주국에서도 한층 강화되었다. 인적 자원의 동원 방면에만 국한해 본다면, 장고봉 사건(1938) 이후 대소련 국경지대로의 군사력 증강을 목표로 하는 북변진흥계획(1939~), 이어 ‘관동군특종연습(관특연, 1941)’ 실시 등의 국방력 강화, 뿐만 아니라 철강, 석탄, 농산물 등 전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력 확대에 따른 노동력 수요는 점점 격증하였다. 그럼에도 1940년 위체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해 기존 만주국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점하던 화북 노동자들이 잇따라 귀국하고 입국하지 않게 됨으로써 만주국 노동력 수급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미 1938년 12월 兵役法調査準備委員會가 조직되고 징병제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인적 자원의 조직과 동원에 대한 전체적인 논의가 추진되었다.⁶ 그 결과 ‘人民總服役主義’에 의한 필입의무제를 채용하기로 결정하였다. 1939년 4월 만주국 정부가 발표한 ‘人民總服役法案’에 의하면⁷ 兵役과 公役의 두 제도를 두고 두 부문 모두 의무제를 채택하도록 하였다. 같은 해 10월 人民總服役法審議委員會가 구성되고 兵役法과 아울러 勤勞服役法の 법안 심의가 진행되었다.⁸ 그 결과 이듬해인 1940년 2월 우선적으로 병역제도를 시행하고 공역제도는 연기하기로 하였다.⁹ 이에 따라 1940년 4월 11일 만주국 징병제인 國兵法이 제정, 공포되었다.¹⁰ 본 법에 근거하여 만주국에서는 만 19세에 달하는 만주국 남자를 대상으로 징병검사를 실시하고 합격자

6 전경선, 2017, 「전시체제 하 만주국의 국병법 선진」, 『만주연구』23 참조.

7 「人民總服役法解説(二)」, 『盛京時報』, 1939년 5월 13일.

8 滿洲國史編纂刊行會 編, 1971, 『滿洲國史(各論)』, 財團法人滿蒙同胞援護會, 1177쪽.

9 「空前要綱案審議可決明年度頒布實行 總服役制與公役制決暫緩」, 『盛京時報』, 1940년 2월 17일.

10 「國兵法(勅令 第71號)」, 「國兵法施行令(勅令 第72號)」, 『滿洲國政府公報』 第1789號(康德7年 4月 11日).

에 한하여 入營, 3년 동안 복무를 강제하였다. 1941년 6월 1일 징병제에 의해 징집된 청년들이 처음으로 입영하였다.¹¹

한편 국병법 실시로 인해 잠시 미뤄졌던 공역제도 역시 논의가 진척되었고 그 결과 1942년 11월 國民勤勞奉公法 및 시행규칙, 아울러 國民勤勞奉公隊 編成令이 제정, 공포되었다.¹² 이에 따라 제국 인민 남자로서 병역에 복역하지 않는 자는 불구 폐질, 정신이상자 등이 아닌 한 모두 國民勤勞奉公에 복역할 의무를 지고 연령 21세에서 23세 사이에 12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勤勞奉公隊에 입대해서 복무하게 되었다(제3~5조). 국민근로봉공대에 편입된 청년들은 국방건설, 철도 및 도로 건설, 치수, 수리 및 조림, 토지개발, 주요 생산, 농산물 생산 수확, 재해 구호 등의 사업, 기타 민생부 대신이 지정하는 사업에 투입되었다(제10조).

곧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학생을 대상으로 근로공역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學生勤勞奉公令이 공포되었다.¹³ 즉 대학(민생부 대신이 지정한 대학에 준하는 교육시설 포함)에 재학 중인 남자 학생은 학생근로봉공대로 편성되어 매년 30일 이상 45일 이하의 기간을 국방 건설 사업을 비롯한 기타 민생부 대신이 지정하는 사업에 복역해야 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학생근로봉공의 의무를 완수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에는 대학의 장이 졸업을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제9조). ‘근로봉사’ 혹은 ‘근로봉공’이라는 명분의 무상 의무 노동은 특히 대학생들에게는 졸업장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 코스로 강제되었던 것이다.

이렇듯 청년, 학생을 일정 기간 노동력으로 징발하는 공역제도인 국민, 학생근로봉공법의 제정에 앞서 만주국 정부는 1941년 9월 〈勞務新體制要綱〉

11 「劃期的國兵法の實施」, 『滿洲國現勢(康德9年版)』, 218쪽.

12 「國民勤勞奉公法」(勅令 第218號), 「國民勤勞奉公隊編成令」(勅令 第219號), 『滿洲國政府公報』 第2548號(康德9年 11月 18日).

13 「學生勤勞奉公令」(勅令 第277號), 『滿洲國政府公報』 第2578號(康德9年 12月 23日).

을 결정하였다.¹⁴ 그것은 국내 노동력이 한층 더 부족해지고 더욱이 화북으로부터 노동자의 유입이 급감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수급의 구조를 기존 화북 노동자에 대한 의존에서 국내 노동력 동원으로 전면 전환하려는 시도였다. <요강>의 내용은 國民皆勞, 근로존중, 勞務興國의 세 가지를 골자로 하였다. 특히 '국민개रो'의 방침은 이미 진행되고 있던 인민총복역제 논의와 연계 속에서 노무대책을 수립하려 한 것이고 결국 그것은 국민근로봉공법의 제정, 실시로 구체화되었다.

정리하자면, 전시 만주국 인적 자원의 동원은 국법법과 더불어 인민총복역제의 실천을 통해 진행되었다. 동원의 주요 대상은 청년, 학생들이었고, 병역의 의무를 지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기간 무상 노동(근로봉공)의 의무를 다해야 했다. 특히 후자의 경우 국민의 국가에 대한 부담을 공평하게 한다는 명분을 내걸었으나 실상은 부족한 노동력 수급책에 다름 아니었다.

이러한 전시 만주국의 국책들은 무엇보다 민중의 '건강한 신체'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이에 만주국 민중들은 국책의 수행과 더불어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체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중요한 국가적 사명으로 부여받게 되었다. '健康報國' 슬로건의 등장은 전시 '건강한' 인적 자원, 즉 '健民'의 확보가 중요해진 시국을 단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즈음 만주국 정부는 기존 치안, 생산 등의 부문에 밀려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보건 부문에도 적극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민생부가 주체가 되어 보건행정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민중 개개인에게도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국가 총력의 기본 요소는 국민의 건강에 달려 있어 건전한 국민은 바로 국가 흥성의 원동력인 까닭에 중앙 방면에서는 치안, 생산을 확립하는 데 급한 나머지 관례대로 미룰 수 있다고 여겼던 보건, 교육 등 기초 행정에 대해서 현재 이

14 滿洲國史編纂刊行會 編, 1971, 앞의 책, 1167~1175쪽 참조.

미 그 적극적 개선과 진흥(의 조치)을 취하지 않는 것을 용인할 수가 없다. 이로써 국가의 건전 발달을 도모하여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빈틈없이 확보하는 대책을 단호히 강구해야 한다. 한편 국민은 국가에 대해 奉公의 誠(意)을 다하기 위해 더욱 개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의사, 위생을 관장하는 사람은 국가에 대한 책무, 특히 자신의 책임이 중대함을 인식해야 한다.¹⁵

라고 하여 “국민의 건강”은 국가 총력의 기본 요소로, “건전한 국민”은 국가 흥성의 원동력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진 것이다. 더욱이 “국민”이 “국가”에 대한 책무를 다하기 위한 전제가 개개인의 건강이었다. 민중의 신체, 체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전시 국책의 시행에 즈음하여 민중들에게 건강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건강 증진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시국은 갈수록 민중들이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체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선택이 아닌 책무로 만들고 있었다.

평텐성장이 관할 시의 보건과장들을 대상으로 한 훈시에는 전쟁과 민중 체력의 불가분성이 더욱 중요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 중대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의 총력을 다하여 국내 농업, 공업, 생산 부문을 증강하여 국방국가신체제의 요망에 순응해야 한다. 이로써 국방의 안전과 민심의 안정을 도모함에 있어 그 원동력인 특히 국민 보건 체위의 향상으로써 문제를 선결해야 한다.

(중략)

이러한 전시 하, 중대 시국에서 국민은 더욱이 職役奉公을 쇄신하여 총력으로써 그 사명을 달성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 체력은 국력의 기본적 요소에 속하고 그 증강 여부는 즉시 대동아 건설에 반영된다. 이에 여러분은 이러한 중

15 「發展國力安定民心 強化保健行政 - 民生部積極研究具體策中」, 『盛京時報』, 1941年 5月 17日.

대 관계를 명기하여 노력에 만전을 기하고 보건행정을 확충하기를 희망한다.¹⁶

이상에서 보듯 태평양전쟁에서 만주국이 그 역할을 완수하기 위한 전제 역시도 민중의 “건강 체력”이었다. 또 그 체력 증강의 여부는 민중들이 동원된 각 부문에서 결과로 나타날 것이기도 했다. 그것이야말로 전시 민중의 건강, 체력과 직결되는 보건행정을 확충해야 하는 이유였던 것이다. 따라서 태평양전쟁 발발을 전후한 시기 만주국의 보건·위생정책은 초기 전염병의 예방, 의료의 보급, 아편의 엄금 등에 중점을 둔 정책에서 전시 인적 자원의 확보라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의 체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건민보건정책’으로의 방향 전환을 분명히 하였다.¹⁷

이러한 체력향상의 집중 관리 대상은 말할 필요도 없이 청장년층이었다. 앞서 언급한 전시 주요 국책인 ‘국병법’, ‘국민근로봉공법’의 적용 대상이 그 들이었기 때문이다.

Ⅲ. 식민권력의 대민 체력의 관리와 통제

1. 國民體力證檢定制度の 실시

만주국 정부가 민중의 건강과 체력을 관리 혹은 통제하는 주요 방식은 ‘신체검사’와 ‘체력검사’였다. 그 주요 관리 대상은 역시 학생, 청소년이었다.

1936년 4월 만주국 정부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발육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全國學生身體檢査要項〉(문교부 훈령 제21호)을 제정, 시행하였다.¹⁸ 〈요항〉에 의거한 신체검사의 항목은 발육, 영양을 포함 14가지에 걸쳐 있다.¹⁹ 첫 번째

16 「七市保健科長會議昨在省署開幕」, 『盛京時報』, 1942年 5月 20日.

17 滿洲帝國政府 編, 1969, 『滿洲建國十年史』, 原書房, 260~261쪽.

18 「學生身體檢査要項」(文教部 訓令 第21號), 『滿洲國政府公報』 第670號(康德 3年 4月 10日).

19 一. 發育(身長, 體重, 胸圍), 二. 榮養, 三. 脊柱, 四. 胸廓構造, 五. 視力 및 屈折狀態, 六. 色神, 七. 眼疾, 八. 聽力, 九. 耳鼻疾病, 十. 齒牙, 十一. 扁桃腺 肥大, 十二. 結核性疾病, 十三. 貧血, 十四. 其他 異常疾病, 十五. 監察 필요 여부.

발육 항목에서는 신장, 체중, 가슴둘레를 측정하였다. 학생 신체검사는 매년 4월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체검사의 결과를 교장이 본인이나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였다.

또한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일정한 체력 표준을 제시하여 그들의 체력을 검사하는 청소년체력검사가 실시되었다. 특히 청소년체력검사는 만주국 체육주간에 실시되는 중요한 행사 중의 하나였다. 체육주간은 1933년(대동2년) 문교부 훈령으로 지정되었다. 매년 9월 15일부터 1주일 간 전국적으로 각종 체육행사를 실시하고 체육사상을 보급하려 한 것이다.²⁰ 만주국 정부가 체육주간을 실시한 의의를 좀더 살펴 보면

본 주간을 통해서 국가가 의도하는 바는 건전한 국민체육운동을 보급하여 국민들 사이에서 실시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항상 체력향상과 민족협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로써 국가 흥룡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강화 확충을 도모하는 것에 있다.

체육주간이 단지 해당 주간을 위한 행사만으로 끝나서는 그 주간의 의의는 극히 약하게 되어 버리는데 이 주간을 계기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체력 혹은 건강에 대해서 자세히 인지하는 계기가 되고 실제 운동에 참가한 체험을 기초로 계속해서 건강과 운동의 기쁨을 맛보고(운동을)계속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으면 본 주간의 목적은 훌륭히 달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²¹

이렇듯 체육주간은 민중들이 이 기간에 실시하는 체육 관련 행사에 참가함으로써 체력 향상과 민족협화에 관심을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본 주간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체육'이야말로 민중들이 자발적 의지를 가진다면 스스로가 심신을 단련하

20 滿洲帝國政府 編, 1969, 앞의 책, 888쪽.

21 滿洲國 民生部 保健司 保健體育科, 1939, 「康德五年度全國體育週間ニ就テ」, 『滿洲國體育行政概要』, 222쪽.

고 건강과 체력을 증강시킬 수 있는 신체 단련의 중요한 수단이었다. 이에 전시 민중들의 건강과 체력의 중요성이 더해지면서 체육대회 등 체육 관련 행사 역시 갈수록 빈도가 증가하고 규모가 커지게 되었다.

더욱이 만주국 정부는 체육주간을 통해 민중들이 자신의 건강과 체력을 체크하도록 하였다. 제7회 체육주간(1938)부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력검사가 실시되었다.²² 체력검사 종목은 달리기, 중량 운반, 건국체조 3종목이었다. 당시 만주국에서 요구하는 청소년의 표준 체력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 체력검사 종목 및 표준〉

| | 달리기 | 중량운반 | 건국체조 제 1, 2조 |
|-----|--------------|----------------------------|--|
| 남자부 | 5000m 27분 이내 | 30kg 200m(거리) | (공통) 동작의 정확성 시작과 끝의 연속성 제1조: 신체 유연성 제2조: 신체 강인성 |
| 여자부 | 2500m 25분 이내 | 14kg 200m(거리) (7kg씩 2개) | 상동 |

滿洲國 民生部 保健司 保健體育科, 1939, 『滿洲國體育行政概要』, 55쪽.

체력검사 3종목에서 위에 제시한 체력 표준에 도달한 남녀 청소년은 市, 縣, 旗長으로부터 ‘체력우수증’을 받았다. ‘체력우수증’을 받는다는 것은 만주국 정부로부터 “심신 모두 국민의 중견층으로서의 자격을 가진 것을 인정”²³받는다는 의미였다. 만주국 식민권력은 특정 종목에 관한 체력측정을 통해 체력 검사에 참가한 남녀 청소년 개개인이 자신의 체력의 현 상태를 인지하고 나아가 식민권력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체력을 가지도록 독려했다.

22 滿洲國 民生部 保健司 保健體育科, 1939, 「康德五年度全國體育週間ニ就テ」, 『滿洲國體育行政概要』, 222쪽.

23 滿洲國 民生部 保健司 保健體育科, 1939, 「康德五年度全國體育週間ニ就テ」, 『滿洲國體育行政概要』, 54쪽.

체력 검사에서는 체력에 관한 합격증인 ‘체력우수증’을 수여하는 방법으로 청소년들의 체력 향상을 유도하고 장려한 것이다.

이러한 체력검사는 1941년(강덕8년) 국무원 민생부 훈령으로써 〈國民體力證檢定實施要綱〉이 제정되고²⁴ 국민체력증검정제도가 시행되면서 한층 강화되었다. 〈요강〉의 방침에 의하면

모든 청소년이 자기 체력의 現狀과 아울러 체육의 본의를 깊이 인식하는 동시에 체육운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자발적으로 불러일으키게 한다. 이로써 일상생활 속에서 차세대 중견인 청소년의 체력 증강과 배양을 도모하고 국력의 근본인 청소년 체력의 현상과 그 進展 정형을 계속적으로 조사하여 체육 지도의 거점으로 삼고자 한다.

이상에서 보듯 국민체력증검정제도는 앞서 시행된 청소년 체력검사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체력 증강과 배양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다만, 본 제도의 시행으로 청소년의 체력 관리는 이전과는 다른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민생부(대신) 주관 하에 검정 종목이 5종으로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제시된 표준 역시 각 종목마다 상, 중, 하로 세분되었고 급외도 3단계로 설정되었다.

〈국민체력증검정표준〉

| 종목 | 상급 | 중급 | 초급 | 급외 | | | |
|-----|----------|--------|--------|-----|--------|--------|-----------|
| | | | | 갑 | 을 | 병 | |
| 달리기 | 100미터 | 14초 | 15초 | 16초 | 17초 | 18초 | 18초 이상 |
| | 200미터 | 7분 30초 | 8분 | 9분 | 10분 | 11분 | 11분 1초 이상 |
| 뛰기 | 달려서 멀리뛰기 | 4미터 80 | 4미터 50 | 4미터 | 3미터 80 | 3미터 50 | 3미터 49 이하 |

24 「關於國民體力證檢定之件」(國務院 訓令 第401號 / 民生部 訓令 第228號), 『滿洲國政府公報』 第2291號(康德 8年 12月 25日).

| | | | | | | | |
|------|-----------|----------|----------|----------|----------|----------|---------------|
| 던지기 | 수류탄 던지기 | 45미터 | 40미터 | 35미터 | 30미터 | 25미터 | 24미터 99 이하 |
| 웁기 | 운반 (50미터) | 60kg 15초 | 50kg 15초 | 40kg 15초 | 30kg 15초 | 25kg 15초 | 25kg 15초 1 이하 |
| 매달리기 | 턱걸이 | 12회 | 9회 | 5회 | 4회 | 3회 | 2회 이하 |

「關於國民體力證檢定之件」, 『滿洲國政府公報』 第2291號(康德 8年 12月 25日)

본 제도의 검정 대상은 15세에서 25세까지의 만주국 남자로서 체력검사를 희망하는 자이고 26세 이상도 특별히 희망할 때는 체력검사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검정은 원칙적으로 1년에 1번 시행되고 검정 합격자는 5종목 모두에서 각 검정의 표준에 도달하는 자로 규정하였다. 민생부 대신은 상, 중, 하급 합격자에게 ‘체력증’과 ‘체력장(배지)’을 수여했다. 검정 실시 결과는 검정 주관자가 감독 관청을 경유하여 민생부 대신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이러한 국민체력증검정제도의 목적은 <요강>에도 적시되어 있듯이 물론 청소년의 체력 증강과 배양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본 제도 시행 하의 체력검사는 15세에서 25세까지의 만주국 남자로 제한되었다. 본 제도는 시행 시기와 대상 연령을 볼 때 징병제인 국병법 시행과의 관련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941년은 국병법이 시행된 해이고 이후 만 19세에 달하는 만주국 남자들은 징병을 위한 장정검사(신체검사)의 대상이 되었다. 만주국 징병제의 경우 ‘精兵主義’를 채택했기 때문에 신체검사의 합격여부가 신체조건, 체격등급으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장정으로 선발되는 자는 ‘신체 건강한 자’여야만 했다. 본 체력검사의 5종목 모두에서 합격한 청소년의 경우 選兵의 기본적 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본 체력검사의 합격자는 민생부 대신으로부터 ‘체력증’과 ‘체력장’을 받게 된다. 그것은 앞서 언급한 청소년 체력검사의 ‘체력우수증’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 체력검사에서의 ‘체력우수증’은 市, 縣, 旗長이 수여하는 것이었다면, 국민체력증검정제도에서의 ‘체력증’은 중앙 정부기관인 민생부의 대신이 수여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중앙 정부 차

원에서 체력검사를 관리하기에 이를 만큼 그 중요성이 더 커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요강>에 의하면 민생부 대신의 ‘체력증’과 ‘체력장’을 받은 자는 일본제국 厚生省의 체력검정 합격자 및 關東局 체력검정 합격자와 동일하게 인정됨을 명시하였다. 이것은 곧 본 체력검사의 합격자 혹은 합격 그 자체의 위상을 제고시킴으로써 대상자들의 신체 단련과 체력검사에 참가를 적극 유도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국민체력법의 제정

태평양전쟁 시기 전시 동원체제가 강화됨에 따라 만주국의 인적 자원에 대한 관리와 통제 역시 한층 엄중하게 추진되었다. 전시 국책을 완수할 건강한 인적 자원의 확보는 국가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였다. 특히 국책 수행에 있어 중핵이 되는 청소년, 학생의 건강, 체력은 식민권력의 집중 관리의 대상이 되었다. 식민권력은 청소년, 학생의 신체, 체력 향상에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시도했고 그것은 법률 제정으로 이어졌다. 1942년 7월 ‘국민체력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1) 체력검사의 의무화

만주국 민생부는 1942년 7월 20일 칙령(제174호)에 의해 <國民體力法>을²⁵ 공포, 시행하고 곧이어 민생부령(제29호)으로써 <國民體力法施行規則>을²⁶ 제정, 시행하였다. 전문 29조로 구성된 <국민체력법>의 제1조에는

본법은 국민의 체력을 검사함으로써 그 증강에 필요한 지도를 시행하고 국민 체력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5 「國民體力法」, 『滿洲國政府公報』第2452號(康德9年 7月 20日).

26 「國民體力法施行規則」, 『滿洲國政府公報』第2455號(강덕9年 7月 23日).

라고 한 바와 같이 국민 체력 검사의 목적은 국민 체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고 그 방법으로 정부가 나서서 체력 증강에 필요한 지도, 즉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었다. 앞서 시행된 체력검사에서는 피검사자가 그 검사결과를 통해 자신의 체력의 현 상황을 인지하도록 하는 데에 그치고 정부 차원의 강제성을 지닌 후속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다만 표준 체력을 지닌 자에 대한 표창을 통해 체력 향상을 장려할 뿐이었다. 그러나 <국민체력법>에 와서는 체력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식민권력은 보다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의 체력 향상에 개입하려 하였다.

<국민체력법>에 의거하여 만주국 17세부터 19세까지의 청소년은 년 1회 체력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다. 체력검사의 의무는 피검사자 본인은 물론 미성년인의 법정 대리인 등 그 보호인에게도 있었다(제2, 제4, 제5조). 아울러 상시 피검사인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사업주 혹은 관리인 등은 고용된 피검사인의 체력검사를 집행할 의무가 있었다(제6조).

또한 新京特別市長, 市長, 縣長 등의 명령을 위반해 체력검사를 집행하지 않은 자, 피검사인의 체력검사 의무 이행 또는 보호인의 체력검사 의무 이행을 방해하는 자는 1천 圓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제25조), 피검사인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체력검사를 받지 않은 자, 보호인으로서 피검사인의 체력검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제26조).

체력검사의 항목은 크게 신체계측, 기능검사, 질병이상검진으로 나뉘었다(제9조). 신체계측 및 기능검사에서는 신장, 체중, 가슴둘레, 앉은키를 측정하고 시력, 色神(색맹과 색약), 청력을 검사하였다. 기능검사는 운동기능검사로 민생부 대신이 지정한 항목을 시행해야 했다(시행규칙 제33조).

이러한 체력검사 결과에 근거하여 담당의사(體力檢查醫)는 필요시 본인이나 보호인에게 체력향상에 관해 지도해야 하고(제13조), 신경특별시장, 시장, 현장 혹은 기장 역시 필요시 피검사인 본인 혹은 보호인에게 취업 장소 또는 시간의 제한, 업무의 변경 및 기타 체력 향상에 관해 지시할 수 있었다. 그 내용은 필요시 피검사인의 사용자에게도 적용되었다(제14조).

이상과 같이 만주국 정부는 청소년 체력검사를 법률 제정으로 의무화하였

다. 즉 의무 이행자가 체력검사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실행은 아니지만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서 처벌하는 방식으로 체력검사를 강제하였다. 뿐만 아니라 체력검사 결과에 근거한 체력검사의의 '지도', 신경특별시장 등 관할 지역 장의 '지시' 등 후속조치를 통해 체력허약자 혹은 신체허약자의 체력을 향상시키려고 하였다. 전시 만주국 정부의 민중, 특히 청소년 대상의 체력 관리 방식은 갈수록 적극성과 강제성을 띠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갔다. 전시 '건강한' 인적 자원의 확보가 그 만큼 절실해지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2) 국민병의 통제

민중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체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어 질병을 통제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본 체력검사의 항목에는 疾病異常檢診이 포함된다. 그 내용은 주로 결핵성 질환, 트라코마(沙眼), 기타 안질, 화류병, 기생충병, 정신병, 정신박약, 심장병, 신장병, 영양장애, 각기(脚氣), 치루(痔瘻), 귓병(耳疾), 코, 인후질환, 피부질환, 치과질환(齒疾) 및 척주, 흉곽 기타 형태 이상 등이 다(시행규칙 제35조). 특히 결핵성 질환, 트라코마, 화류병을 앓고 있는 피검사인 본인 또는 보호인에 대해서는 필요시 新京特別市長, 市長, 縣長 혹은 旗長은 '요양'에 관한 처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제15조).

결핵, 트라코마는 만주(국)의 '국민병'으로 불릴 만큼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질병이었다. 결핵의 경우, 환자가 많은 것은 만주지역 생활양식의 불량, 극심한 기후의 변화와 약 반년에 걸친 겨울철(冬期)의 칩거생활 등이 원인이었다.²⁷ 1941년 무렵 결핵 환자의 숫자는 대략 70여만 명으로 추정하는데 전 인구의 1/58에 해당하는 수치였다.²⁸ 게다가 환자의 대부분이 국가의 중견층인 청장년자라는 데에 그 심각성이 있었다. 이에 결핵은 청장년층의 체력 증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제해야 할 질병 중에 하나였다. <국민체력법>에 의

27 滿洲國 民生部 編, 1943, 『民生年鑑(第4次)』, 97~98쪽.

28 滿洲國 通信社 編, 1942, 『滿洲國現勢(康德9年版)』, 83쪽.

하면 질병이상검진에 있어 결핵 검사는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를 시행해야 함을 규정하였고(시행규칙 제36조), 화류병 등 기타 특별지도를 필요로 하는 질병과 아울러 X선 검사, 객담 검사, 혈액 검사 등 정밀검사 실시를 규정하였다(시행규칙 38조).

덧붙이자면, 만주국 정부는 ‘국민건강주간’의 행사를 통해서도 질병의 적극적인 관리와 통제를 시도했다. 가령 1941년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국민건강주간’이 실시되었다.²⁹ 본 주간은 보건생활일(20~22일), 결핵예방일(23~24일), 전염병예방일(25~26일)의 3단계로 나누어 의식주 등 환경위생의 개선, 결핵예방지식의 보급 및 각 직장, 학교 등에서 건강진단의 실시, 청결소독법 등 여러 행사를 전개하였다. ‘국민건강주간’에서도 ‘결핵예방일’이 별도로 설정될 만큼 결핵은 만주국에 만연된 질병 중 하나였다. 평토펬시의 예를 들자면 ‘결핵예방일’에는 결핵 관련 지식을 보급하고 戶外運動, 체조, 일광욕 등 결핵예방법을 장려하고 X선 검사 등 결핵검사를 받도록 독려하였다. 또한 ‘전염병예방일’의 행사는 특히 화류병과 트라코마 예방에 집중되었다.³⁰

3) 체력수첩의 발급

체력검사를 받은 피검사인 본인 또는 보호인은 민생부의 직인이 찍힌 체력수첩을 발급받았다(제11조). 체력수첩에는 1) 기재 연월일, 2) 병명 혹은 증상, 3) 치료 필요 일수, 4) 본인의 체력에 관한 지도상 특별히 참고해야 할 사항 등의 내용이 기입되어야 했다(시행규칙 제47조). 체력수첩은 피검사자 또는 이미 검사를 받은 자가 연령 26세가 될 때까지 보존해야 했다(시행규칙 제49조). 뿐만 아니라 1) 체력검사를 받을 때, 2) 체력향상에 관한 지시를 받을 때, 3) 요양에 관한 처지 명령을 받을 때, 4) 요양 지도를 받을 때, 5) 의사 진

29 「國民健康週間全國各地一齊開始」, 『盛京時報』, 1941年 10月 21日.

30 「奉市週間行事已經規定實施」, 『盛京時報』, 1941年 10月 21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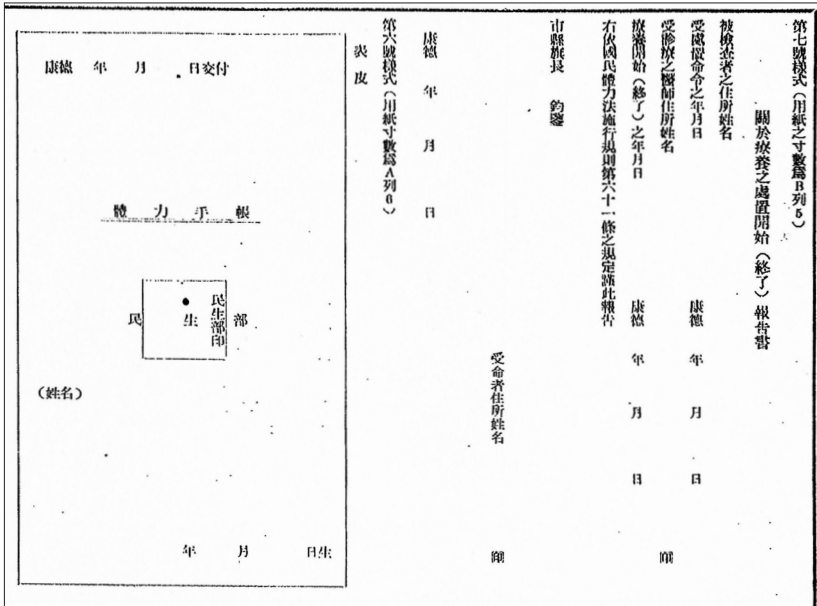


그림 1 만주국 체력수첩 양식

료를 받을 때, 6) 집단검진을 받을 때, 7)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 제출을 명 받았을 때, 이상의 경우에 체력수첩을 제시해야 했다(제51조).

체력수첩에는 피검사자 본인의 체력검사 결과뿐만 아니라 이후 26세가 될 때까지의 의사진료 기록 등 건강 관련 모든 것들이 기재되었다. 따라서 체력수첩은 피검사인 본인의 체력을 증명하는 ‘체력증명서’이자 건강에 관한 모든 이력이 기재되어 있는 ‘건강증명서’이기도 했다.

체력수첩의 표지 안쪽에는 <본인, 보호자 須知> 사항이 6가지가 기재되어 있다. 2번에는 “이 수첩은 본인 혹은 보호자가 26세에 이르기까지 보존할 의무가 있다. 그후에는 또 일생의 건강이력부로서 중요하게 보존해야 한다”, 6번에는 “이 수첩에 기재된 기록을 지우고 고쳐 쓸 경우 처벌받는다”고 하였다. 체력수첩은 26세까지는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하며 그후에도 평생 보존하도록 하였다.

만주국 식민권력은 피검사자의 체력검사와 아울러 그 결과지인 체력수첩

의 소지도 의무화하였다. 이로써 국책 수행의 주체인 청소년들의 체력에 관한 식민권력의 통제는 한층 강화되었다.

IV. 맺음말

전시 만주국 식민권력은 전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건민'을 창출하기 위해 민중의 건강과 체력을 적극 관리하고 통제하였다. 그 주요 방식은 신체검사와 체력(장) 검사였고 검사의 주 대상은 전시 주요 국책 수행자인 학생, 청소년이었다.

만주국에서는 일찍이 체육주간을 설정하고 체육 관련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심신을 단련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체육, 운동을 민중들의 일상 속에 정착시키고자 하였다. 체육주간을 주요 행사 중 하나는 청소년 체력검사였다. 달리기, 중량 운반, 건국체조 3종목에 표준을 제시하고 표준에 도달하는 남녀 청소년들에게는 '체력우수증'을 수여함으로써 그들의 체력 증강을 장려하였다.

이후 체력검사는 1941년(강덕8년) 국무원 민생부 훈령으로써 〈國民體力證檢定實施要綱〉이 제정되고 국민체력증검정제도가 시행되면서 한층 강화되었다. 민생부(대신) 주관 하에 검정 종목이 5종으로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제시된 표준 역시 각 종목마다 상, 중, 하로 세분되었고 급외도 3단계로 설정되었다. 검정 합격자는 5종목 모두에서 각 검정의 표준에 도달하는 자로 규정하였다. 민생부 대신은 상, 중, 하급 합격자에게 '체력증'과 '체력장(배지)'을 수여했다. 본 제도는 시행 시기와 대상 연령을 볼 때 징병제인 국병법 시행과의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체력검사에서는 합격자에게 일본제국 厚生省의 체력검정 합격자 및 關東局 체력검정 합격자와 동일한 위상을 부여함으로써 신체 단련과 체력검사에 참가를 적극 유도하고자 하였다.

태평양전쟁 전후 시기 전시 동원체제가 한층 강화되자 만주국 식민권력은 청소년, 학생의 신체, 체력 향상에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시도했고 그것은 법률 제정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제정된 〈국민체력법〉은 17~19세 남자의

체력검사를 의무화한 것이다. 체력검사의 내용에는 기존 체력검사에도 질병 이상검사가 추가되었다. 검사 결과 신체허약자에 대해서는 ‘지도’, 결핵, 트라코마, 화류병 환자에 대해서는 ‘요양’의 후속 조치가 취해졌다. <국민체력법>의 체력검사에서는 특히 질병이상검사를 추가하여 질병을 통제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체력을 증강시키려고 하였다. 체력검사 후에는 피검사인의 체력, 건강 이력이 기재된 체력수첩을 발급하였다.

종합하자면, 태평양전쟁 전후 시기 시행된 징병제, 국민개로제 등의 국책은 건강한 인적 자원의 확보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국책 수행에 있어 중핵이 되는 청소년, 학생의 건강, 체력은 식민권력의 집중 관리의 대상이 되었다. 시국이 갈수록 엄중해짐에 따라 만주국 식민권력의 대민 체력 동원 혹은 관리의 식민권력이 요구하는 수준의 표준 체력을 가진 자에게 ‘체력우수증’이나 ‘체력증’, ‘체력장’을 수여하여 체력 증진을 장려하는 방식에서 표준 미달자(체력허약자, 질환자)에게 ‘지도’, ‘요양’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여 개선을 강요하는 보다 강제성을 띠는 방식으로 전환해갔다.

참고문헌

1. 자료

- 盛京時報影印組, 1985, 『盛京時報(復刊本)』 審陽: 盛京時報影印組
- 滿洲國國務院總務廳, 1936, 『滿洲國政府公報』 第670號(康德 3年 4月 10日)
- 滿洲國國務院總務廳, 1940, 『滿洲國政府公報』 第1789號(康德 7年 4月 11日)
- 滿洲國國務院總務廳, 1941, 『滿洲國政府公報』 第2291號(康德 8年 12月 25日)
- 滿洲國國務院總務廳, 1942, 『滿洲國政府公報』 第2452號(康德 9年 7月 20日)
- 滿洲國國務院總務廳, 1942, 『滿洲國政府公報』 第2455號(康德 9年 7月 23日)
- 滿洲國國務院總務廳, 1942, 『滿洲國政府公報』 第2548號(康德 9年 11月 18日)
- 滿洲國國務院總務廳, 1942, 『滿洲國政府公報』 第2578號(康德 9年 12月 23日)
- 滿洲國通信社 編, 1941, 『滿洲國現勢(康德八年版)』 新京: 滿洲國通信社
- 滿洲國通信社 編, 1942, 『滿洲國現勢(康德九年版)』 新京: 滿洲國通信社
- 滿洲帝國民生部 編, 1943, 『第四次民生年鑑』, 新京: 滿洲帝國民生部
- 滿洲國民生部保健司保健體育科, 1939, 『滿洲國體育行政概要』, 新京: 滿洲國民生部

2. 연구논저

- 오카베 마키오 지음, 최혜주 옮김, 2009, 『만주국의 탄생과 유산-제국 일본의 교두보』
서울: 어문학사
- 滿洲國史編纂刊行會 編, 1971, 『滿洲國史(各論)』 東京: 財團法人滿蒙同胞援護會
- 滿洲帝國政府 編, 1942, 『滿洲建國十年史』(東京: 原書房, 1969, 校註本)
- 沈潔, 1996, 『「滿洲國」社會事業史』 京都: ミネルヴァ書房
- 解學時, 1995, 『偽滿洲國史新編』 北京: 人民出版社
- 寒川恒夫 編著, 2017, 『近代日本を創った身體』 東京: 大修館書店
- 藤野 豊, 2003, 『厚生省の誕生—医療はファシズムをいかに推進したか』 京都: かもがわ
出版
- 吉見俊哉 編著, 2002, 『一九三〇年代のメディアと身體』 東京: 青弓社
- 鹿野政直, 2001, 『健康觀にみる近代(朝日選書)』 東京: 朝日新聞出版
- 藤野 豊, 2000, 『強制された健康—日本ファシズム下の生命と身體』 東京: 吉川弘文館

黒田 勇, 1999, 『ラジオ體操の誕生』東京: 青弓社

山口昌男, 1995, 『挫折の昭和史』東京: 岩波書店

전경선, 2017, 「전시체제 하 만주국의 국병법 선전」『만주연구』23

전경선, 2011, 「만주국의 신체동원과 국민만들기 - 체육정책의 전개를 중심으로」『역사와 세계』39

김예림, 2005, 「전시기 오락정책과 문화로서의 우생학」『역사비평』2005년 겨울호

都筑眞, 2019, 「滿洲國における厚生運動の方針に関する研究」『日本女子體育大学紀要』49

都筑眞, 2018, 「日本と滿洲における厚生大会の演技種目に関する一考察」『日本女子體育大学紀要』48

權學俊, 2018, 「近代日本における身體の國民化と規律化」『立明館産業社會論集』第53卷 第4號

鉄鋼, 2015, 「滿洲國期・興安地域における医療衛生事業の展開」『OUFCブックレット』7

都筑眞, 淺野哲也, 村井友樹, 2011, 「戦時下における日本の厚生運動-厚生大會(1938-1940)を中心として-」『筑波大學體育科學系紀要』34

鈴木 靜, 2010, 「滿洲國における「癩」對策と國立癩療養所同康院に関する一考察-2009年 間取り調査等をふまえて-」『行政社會論集』第22卷

沈潔, 1994, 「「滿洲國」植民地社会事業行政の展開」『社会福祉学』35-2

투고일: 2020년 10월 21일, 심사완료일: 2020년 10월 31일, 게재확정일: 2020년 10월 31일

■ Abstract ■

The Policy for Mobilizing Physical Strength of a Population and Making Healthy People in Wartime Manchukuo

Jeon, KyoungSun (Silla University)

This research probes colonial efforts to promote physical fitness and produce healthy people during wartime Manchukuo.

The colonial authority in wartime Manchukuo considered healthy human bodies as a crucial human resource. It thus strictly monitored its subjects with physical examinations and fitness assessments. Enforcing the national physical fitness system in 1941 led to heightened assessment results. After the Pacific War, Manchukuo's colonial toughened its mobilization system with more stringent health policies aimed at producing physically strong youth and students. The National Physical Fitness Act of 1942 obliged every man, aged 17 to 19, to take a physical fitness test, including physical strength and health checks (e.g., tuberculosis). The findings reveal that the colonial authority in Manchukuo developed physical strength and management as a means of mobilizing its population, enticing its subjects with 'fitness excellence certificates' while deeming others unfit and remanding that they receive coaching or extra training.

Key words: Manchukuo, Physical Strength Enhancement, The National Physical Fitness Assessment System, The National Physical Fitness Act